

의안번호	2217821
의 퇴 인	김용태 의원
회 답 일	2026. 8. 6.
추 계 번호	26B1714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<u>5의2. 여성농어업인의 영농·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 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<신 설></u>	의무규정
2	안 제11조의2(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지역적 특수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우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해당 여성농어업인에게 현금 또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2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.(제3항)	재량규정
		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대상·범위 및 지급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(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)	•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1조의2(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)	

2. 상세 사유

□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(안 제9조제5호의2 신설)

-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,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,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,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영농·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의 종류,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별 지원 단가와 지원 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□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 대체 지원(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)

-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·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·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(도우미)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－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, 현재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및 육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여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을 보호하는 농가도우미 사업(지자체 사업)과 임신·출산·사고·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활동지원 사업(해양수산부 사업)이 있음

[표 1] 여성농어업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사업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2026 예산
농가도우미 사업	(지원액)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배우자(남성농업인)에 대해 지자체별로 1일 40,000~90,000원의 80~100% 지원(0~20% 자부담) (지원일수) 지자체별로 45~90일 한도 내에서 지원 (신청기간)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	1,856 (지방비)
어업활동지원 ¹⁾	(사업내용)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, 1일 8만원(최대 10만원 기준) 지원* * 대체인력 인건비의 80%를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30%), 자부담 20%	180 (국비 기준)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이 지역적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우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해당 여성농어업인에게 현금 또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2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한 여성농어업인에게 현금 또는 농식품이용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은 지급 대상·범위 및 지급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어업인 삶의 질 향상(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, 3440-312) 세부사업의 내역사업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